수습직원 평가규칙

제　　정 2020. 07. 0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활용) ①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습기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한 직원 수습기간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정규직원 임용에 활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책임자(직무관련자), 부장, 본부장(여성정책연구소장), 원장 등 근무성적평가

구 분	피 평 가 자				
	연구직	전문직		관리직	공무직
		전문연구원	전문행정원		
	연구부서		비연구부서		
1차 평가자	연구책임자(10%)		팀장(20%)		
2차 평가자	연구부장(25%)		행정지원부장(40%), 성별영향평가센터장(40%)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40%)		
3차 평가자	본부장·여성정책연구소장(25%)				
4차 평가자	원 장 (40%)				

2. 가점부여 : 정기간행물, 이슈브리핑, 학술지 게재실적, 교육참여 등 (최대 10점)

가점내용		가점 부여		비고
		단 독	공 동	
연구직·전문연구원	원내외 정기간행물 원고게재	1회 1.0점	1회 0.5점	
	국내 학술지(학진등재), 해외저널(SCI, SSCI 등) 논문게재	1회 1.0점	참여율	최대 3점
	이슈브리핑 작성	1회 3.0점	참여율	
	국책사업 발굴 (아이템 기준)	1회 1.0점	1회 0.5점	
	정책지원 활동 (행사발표/토론, 정책컨설팅)	1회 0.5점	1회 0.2점	
관리직·전문행정원·공무직 : 교육수료, TFT참여, 봉사활동, 창의제안 등		(평가조정위원회)		

② 근무성적평가 대상 시기와 평가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성적평가 대상 : 수습직원 시작 1개월 후 ~ 만료 1개월 전 (10개월)
2. 평가기준일 : 수습직원으로 최종 근무일 기준 1개월 전

③ 평가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실적평가표 및 실적자료 제출 : 평가대상자는 실적평가표 및 가점대상 실적(정기간행물, 이슈브리핑 작성, 학술지 및 저널논문, 교육참여 등)을 연구기획부에 제출
2. 근무성적 평가 및 보고 : 연구책임자(직무관련자), 부장, 본부장(여성소장), 원장은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기획부에 제출하고 연구기획부장은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원장에게 보고 후 완료한다.
3. 평가결과의 송부 :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결과를 피평가 당사자 및 행정지원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인사심의위원회 개최 :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인 평가대상자를 대상으로 인사규정 제 14조 규정에 의해 정규직원으로 임용 상정

④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2장 수습직원 평가조정위원회

제4조(수습직원 평가조정위원회) 평가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연구본부장과 연구기획부장, 행정지원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원장이 임명하는 직원(또는 외부전문가) 1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구 및 활동실적 등 기타 업무실적의 평가방법
2.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심의·의결
3. 평가방법 및 절차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4.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

제8조(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은 피평가자가 평가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 신청서를 연구기획부로 서면 제출한다. 다만, 근무평가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②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부의 사항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2020.6.4.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